

2020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

기 공고(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20-8호, 2020.2.20.)한 2020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.

2020년3월27일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선발예정인원

(거주지제한) 도내:충청북도내 거주자, 시군:해당시·군 거주자, 전국:거주지 제한없음

시험명	계급	직 렬	직 류	선발예정 인 원	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
	총 계			1,261	
		소 계		81	
		간 호	간 호	67	(도내) 도일괄1, 청주27, 충주9, 옥천4, 영동1, 진천3 , 괴산4, 음성10, 단양1 (시군) 제천7
	8급		간 호 (장애인)	1	(도내) 충주1
		보건진료	보 건 진 료	13	(도내) 청주2, 충주1, 제천4, 보은2, 옥천2, 영동1, 단양1
		소 계		1,140	
		행 정	일 반 행 정	449	(도내) 도일괄37, 청주133, 보은2, 영동8, 진천16, 음성40 (시군) 충주57, 제천43, 보은14, 옥천14, 영동15, 증평5, 진천16, 괴산28, 음성10, 단양11
제 1회 공개경쟁 임 용 시험			일 반 행 정 (장 애 인)	37	(도내) 도일괄6, 청주5, 제천1, 보은2, 옥천2, 영동2, 진천2, 괴산3, 음성8 (시군) 충주1, 증평4, 단양1
			일 반 행 정 (저소득층)	16	(도내) 도일괄2, 청주2, 제천1, 보은2, 옥천1, 영동1, 진천2, 괴산2 (시군) 충주2, 단양1
	9급		지 방 세	30	(도내) 도일괄3, 청주10, 충주2, 제천2, 보은1, 옥천1, 영동3, 진천5, 괴산1, 음성2
		세 무	지 방 세 (장애인)	2	(도내) 충주1, 음성1
			지 방 세 (저소득층)	1	(도내) 청주1
		전 전 산	전 산	7	(도내) 도일괄3, 보은1, 괴산1, 음성2
		선 산	전 산 (장애인)	1	(도내) 음성1



(거주지제한) 도내:충청북도내 거주자, 시군:해당시·군 거주자, 전국:거주지 제한없음

시험명	계급	직 렬	직 류	선발예정 인 원	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
			사 회 복 지	121	(도내) 도일괄3, 청주47, 충주31, 보은3, 옥천4, 영동4, 진천7, 괴산4, 음성6 (시군) 제천11, 단양1
		사회복지	사 회 복 지 (장 애 인)	13	(도내) 청주7, 충주1, 제천1, 음성2 (시군) 증평2
			사 회 복 지 (저소득층)	4	(도내) 청주1, 충주2, 제천1
		사 서	사 서	13	(도내) 도일괄1, 청주3, 충주4, 제천2, 진천1 (시군) 진천2
		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	사 서 (장애인)	1	(도내) 청주1
			일 반 기 계	20	(도내) 청주9, 충주1, 제천2, 보은1, 옥천1, 진천5, 단양1
		공 업	농 업 기 계	2	(도내) 단양1 (전국) 진천1
			일 반 전 기	17	(도내) 도일괄2, 청주4 , 충주7, 제천1, 보은1, 괴산1, 단양1
			일 반 화 공	6	(도내) 도일괄1, 청주2, 충주1, 제천1, 영동1
제 1회			일 반 농 업	54	(도내) 도일괄4, 청주8, 충주9, 제천3, 보은1, 옥천2, 영동5, 진천4, 괴산9, 음성7, 단양2
공개경쟁 임 용 시험	9급	농 업	일 반 농 업 (장 애 인)	2	(도내) 충주1, 영동1
			일 반 농 업 (저소득층)	3	(도내) 청주1, 영동1, 음성1
			축 산	18	(도내) 청주3, 충주4, 제천1, 보은1, 진천2, 괴산1, 음성4, 단양1, 도교육청1
		녹 지	산 림 자 원	22	(도내) 도일괄3, 청주2, 충주1, 제천2, 보은2, 옥천1, 영동4, 괴산2, 음성3, 단양2
			조 경	11	(도내) 청주4, 충주2, 제천2, 괴산2, 단양1
		보 건	보 건	30	(도내) 도일괄3, 청주2, 충주6, 제천6, 보은1, 옥천1, 영동4, 진천3, 괴산3 (시군) 단양1
			보 건 (장애인)	2	(도내) 충주1, 제천1
		식품위생	식 품 위 생	5	(도내) 청주2, 충주1, 제천1, 단양1
		환 경	일 반 환 경	44	(도내) 도일괄3, 청주8, 충주5, 제천5, 보은1, 옥천1, 영동4, <mark>증평2</mark> , 진천3, 괴산1, 음성9, 단양2
		L. 6	일 반 환 경 (저소득층)	1	(도내) 음성1



(거주지제한)	도내 :충청북도내 거주자,	시군:해당시군 거주자.	전국:거주지 제한없음

시험명	계급	직 렬	직 류	선발예정 인 원	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
			도 시 계 획	2	(도내) 도일괄1, 충주1
			일 반 토 목	110	(도내) 도일괄23, 청주26, 충주20, 제천9, 보은2, 옥천5, 영동2, 증평2, 진천3, 괴산6, 음성10, 단양2
			일 반 토 목 (장 애 인)	1	(시군) 충주1
			일 반 토 목 (저소득층)	2	(도내) 도일괄1, 청주1
제 1회		시 설	건 축	49	(도내) 도일괄2, 청주19, 충주1, 제천8, 옥천4, 영동1, 증평1, 진천2, 괴산3, 음성6, 단양2
공개경쟁	9급		건 축 (저소득층)	1	(도내) 청주1
임용시험			지 적	16	(도내) 도일괄5, 청주4 , 충주1, 제천1, 보은1, 옥천1, 괴산1, 음성2
			지 적 (장애인)	1	(도내) 음성1
			디 자 인	1	(도내) 단양1
		방재안전	방 재 안 전	17	(도내) 도일괄3, 청주3 , 충주1, 제천2, 보은1, 옥천2 , 영동2 , 진천1, 괴산1, 단양1
		방송통신	통 신 기 술	8	(도내) 도일괄1, 충주2, 제천2, 보은1, 영동1, 음성1
		소 계		40	
제oşl	7급	행 정	일 반 행 정	10	(도내) 도일괄9, 제천1
제 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	해양수산	일 반 수 산	2	(도내) 제천1, 괴산1
	9급	시설관리	시 설 관 리	3	(도내) 도일괄3 *가축사양, 환경미화, 시설물관리 등 현장업무수행
		운 전	운 전	25	(도내) 도일괄2, 청주10, 영동1, 진천3, 괴산1 (시군) 제천6, 증평2

※ 비 고

- 1) '모집단위'란 "계급-직렬-직류-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"의 구분을 말하고,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되며, "4. 응시자격"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2) 최종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서 신규임용후 「지방공무원법」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전보·전출이 제한됩니다.
- 3) '도일괄'이란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를 일괄 선발하고, 임용후보자를 시·군 또는 도의 결원상황에 따라 배분·추천하는 것으로, 추천받은 기관이 임용예정기관이 됩니다.
- 4) '도교육청' 모집단위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, 임용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도교육청 산하기관입니다.



2. 시험과목

시험명	계급	직 렬	직 류	시험과목
	8급	간 호	간 호	국어, 영어, 한국사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
	οн	보건진료	보 건 진 료	국어, 영어, 한국사, 지역사회간호, <u>공중보건</u>
		행 정	일 반 행 정	필수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
		세 무	지 방 세	필수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지방세법, 회계학(회계원리,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
		전 산	전 산	국어, 영어, 한국사, 컴퓨터일반, 정보보호론
		사회복지	사 회 복 지	필수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 중 2과목
		사 서	사 서	필수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 중 2과목
			일 반 기 계	국어, 영어, 한국사, 기계일반, 기계설계
제 1회	내경쟁 Sulet	농 업 기 계	국어, 영어, 한국사, <u>농업동역학개론</u> , <u>농작업기계학개론</u>	
공개경쟁		О П	일 반 전 기	국어, 영어, 한국사, 전기이론, 전기기기
임용시험	9급		일 반 화 공	국어, 영어, 한국사, 화학공학일반, 공업화학
		농 업	일 반 농 업	국어, 영어, 한국사, 재배학개론, 식용작물
			축 산	국어, 영어, 한국사, <u>가축사양</u> , <u>가축육종</u>
		녹 지	산 림 자 원	국어, 영어, 한국사, 조림, 임업경영
		' '	조 경	국어, 영어, 한국사, <u>조경학</u> , <u>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</u>
		보 건		국어, 영어, 한국사, <u>공중보건</u> , <u>보건행정</u>
		식품위생		국어, 영어, 한국사, <u>식품위생</u> , <u>식품화학개론</u>
		환 경		국어, 영어, 한국사, 화학, 환경공학개론
				국어, 영어, 한국사, 도시계획개론 , 토지이용계획
			일 반 토 목	
		시 설	-	
			지적	
		방재안전	디 자 인 방 재 안 전	
		방송통신	-	
제 2회	7급	항 정	일 반 행 정	필수(6): 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 선택(1): 경제학원론, 지방자치론, 지역개발론 중 1과목
공개경쟁		해양수산	일 반 수 산	<u>국어</u> , <u>영어</u> , <u>한국사</u> , <u>수산일반</u> , <u>수산경영</u>
임용시험	9급	시설관리	시 설 관 리	국어, 한국사, 사회
		운 전	운 전	국어, 한국사,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

※ 비 고

- 1) 출제문항 및 배점 : 각 과목별 20문항, 4지 택1형이며, 100점 만점입니다.
- 2) 시험시간 : 각 과목별 20분입니다.
- 3) 2013년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.

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50조의2 및 「별표 10」참고)

- 4)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가 가능한 시험과목은 위탁 출제하며, 인사혁신처에서 공개로 설정한 시험과목만 시험종료 후 본인의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시험문제 출제 범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7급 행정학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.
 - 사회, 과학, 수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, 사회는 '정치와 법, 경제, 사회·문화', 과학은 '물리학 I, 화학 I, 생명과학 I, 지구과학 I', 수학은 '수학 I, 수학 II, 확률과 통계, 수학'에서 출제됩니다.
 - 방재안전직류의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, 사회재난(인적재난 포함), 위기관리 범위에서, 안전관리론은 안전관리제도, 안전윤리 및 심리(취약계층안전 포함), 분야별 안전(교통, 시설, 생활, 소방, 식품, 테러대비 등)에서 출제됩니다.
- 5)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되며, 문제 등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배포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- ※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는 비공개 시험과목은 굵게 밑줄로 표기하였습니다.

3. 시험방법

시험명	1차 시험	2차 시험	3차 시험	비고
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		필기시험 병합실시)	면접시험	

※ 비 고

- 1) 전(前)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2)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,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시 반영합니다.
- 3)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**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10%를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**합니다. ※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.
- 4)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·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5)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는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」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.

4.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: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동법 제66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이 제한되며, 이를 위반 시 동법 제89조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나. 거주지(주민등록상 주소지) 제한

1) 선발예정인원의 거주지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도 내 거주자 표기: (도내)	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.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(2019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)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(단,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 2.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,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해당 시·군 거주자 표기: (시군)	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.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(2019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)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·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(단,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 2.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, 해당 시·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전 국 표기: (전국)	거주지제한 없음

- 2) 거주지 제한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가)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, 시·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(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합산)이면 충족합니다.
 - 예시: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된 지역(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·행산리·갈산리·부강리·문곡리·금호리·등곡리·노호리 일원)의 거주경력은 충청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 - 나)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"개인별주민등록표"를 기준으로 합니다.
 - 다)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.

다. 응시연령

구 분	응시연령	해당 생년월일	
8급, 9급	18세 이상	2002.12.31. 이전 출생자	
7급 및 연구·지도사	20세 이상	2000.12.31. 이전 출생자	

라. 자격·면허증, 학력, 경력 등의 응시자격

시험명	계급	직 렬	직 류	응시자격
	8급	간 호	간 호	조산사, 간호사
	он	보건진료	보건진료	조산사, 간호사
제 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	전 산	전 산	기 술 사 :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 기 사 : 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 산업기사 : 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,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
	9급	사 회 복 지	사 회 복 지	사회복지사1급, 사회복지사2급, 사회복지사3급
		사 서	사 서	1급 정사서, 2급 정사서, 준사서
		시 설	지 적	지적기술사, 지적기사, 지적산업기사
제 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9급	운 전	운 전	제1종운전면허(대형)

※ 비 고

- 1) 응시에 필요한 자격·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.
- 2)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 가능한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.
- 3) 자격·면허증,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에 대한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.
- 4) 자격·면허증 등의 유효(소지)여부는 신청일이 아닌 발급(취득)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5) 자격·면허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.

마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1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.

- 2) **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**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3)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4)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단, 중복접수를 할 수 없음)

바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)이 **응시원서 접수일**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.
 - 응시자가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,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보호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보호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보호대상자)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보호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. 이 경우 급여(보호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보호)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.
- ※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·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(보호대상자)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. [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보호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, 이 경우 급여(보호)의 신청 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보호)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.]
- ※ 단,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(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)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2)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수급·보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 여 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.
- 3)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단, 중복접수를 할 수 없음)

사. 기 타: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.

5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험명	접수기간 (취소마감일)	가산점 등록기간	구 분	시험장소 공 고	시험일자	합격자 발 표
제 1회 공개경쟁	4.6(월)~4.10(금)	6.13.(토)~6.17.(수)	필기시험	5.22.(금)	6.13.(토)	7.10.(금)
임용시험	(4.13.월)	0.13.(土)~0.17.(十)	면접시험	7.10.(금)	8.3.(월)~8.21.(금)	9.11.(금)
제2회	8.10.(월)~8.14.(금)	1017/E) 1021/A)	필기시험	9.15.(화)	10.17.(토)	11.13.(금)
공개경쟁 임용시험	(8.17.월)	10.17.(토)~10.21.(个)	면접시험	11.13.(금)	11.30.(월)~12.4.(금)	12.11.(금)

※ 비 고

- 1)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(www.chungbuk.go.kr 시험 채용)에 공고하고,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2)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지정한 열람기간 동안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- 3)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가산 해당사항(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, 자격·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)을 등록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4)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면접시험 일정을 포함한 시험장소,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5)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고할 예정입니다.

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접수만가능)

가. 접수방법

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(https://local.gosi.go.kr, 1522-0660)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
나. 접수시간

접수시작일 09:00 ~ 접수마감일 18:00

※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

다.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

- 1)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(8·9급: 5,000원, 7급·연구사·지도사: 7,000원)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결제, 카드결제, 계좌이체 비용 등)이 소요됩니다.
- 2) 저소득층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 대상자)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- 3)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휘급합니다.
 - 가)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
 - 나)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
 - 다)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(취소마감일 내에) 의사 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

라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1)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,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, 모자·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 -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동일원판 사진이 사용되니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 - 본인식별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 신분확인을 위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 접수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 ※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(JPG)규격: 해상도 100dpi 이상에 3.5cm×4.5cm기준
- 2)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모집단위(응시직렬 등)는 변경이 불가하며, 모집단위(응시직렬 등)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.
 - ※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,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취소·접수하는 것으로 가능
- 3)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4) 장애인·임신부 등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[붙임 1] '장애유형별 (임신부 포함) 편의지원 제공안내'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5)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(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) 하여야 하며,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.



7. 양성평등채용목표제

가. 적용시험 :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

나. 채용목표인원 :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%를 곱한 인원수

※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,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

- 다. 실시방법 :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, 합격선 -3점(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-3점을 곱한 점수)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.
 - ※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(性)의 응시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(性)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」에 따릅니다.

8.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

가. 적용대상 :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

- 나. 실시방법 : 모집단위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「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」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. (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)
 - ※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를 미적용할 수 있음

9.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	구 분	가산비율 (과목별 만점의)	비고
	취업지원대상자 (연구·지도사 제외)	5% 또는10%	·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
	의사상자 등	3% 또는 5%	·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
자격증	공통적용 가산점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0.5%~1%	·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(공통적용 가산점1, 직렬별 가산점1)
소지자	직렬(직류)별 가산점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3%~5%	·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'나~마' 참고

나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1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5%, 10%)을 가산합니다.
- 2)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3)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(국가보훈처상담센터 ☎1577 0606)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의사상자 등(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1) 「지방공무원법」제34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3%, 5%)을 가산합니다.
- 2)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3)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(044-202-3255)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4)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'나'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.

라.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(<u>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</u>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1) 공통적용 가산점(전산직 제외)

아래 표에 제시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·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직무분야	임용계급	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				
통신·정보 처리분야	7급, 연구사, 지도사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보안기사	1%	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	0.5%	
	8급, 9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보안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	1%	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	0.5%	
사무관리 분 야	7급, 8급, 9급 연구사,지도사	컴퓨터활용 능력 1급	1%	워드프로세서(舊1급), 컴퓨터활용능력 2급	0.5%	

※ 비 고

- 가) 위 표에서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을 가산합니다.
- 나)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개정법령 등에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.
- 다)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 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, 3급이 국가 기술자격에서 제외(폐지)됨에 따라 종전 워드프로세서 1급만 가산 대상자격증에 포함됩니다. ※ 구(舊) 워드프로세서 2·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

2) 직렬(직류)별 가산점

가) 해당 분야의 자격·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(직류)은 제외

나) 행정직군

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직 렬(직 류)		인정대상 자격증	가산비율
행	정(일반행정)	변호사, 변리사	
사회복지(사회복지)		변호사	5%
세	무(지 방 세)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	

다) 기술직군

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(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[붙임 2] 「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」별표7의4 참고)

구 분	7급, 연구사, 지도사		8-9급	
一	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	기술사,기능장,기사,산업기사	기능사
가산비율	5%	3%	5%	3%

※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.

마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1)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2)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(가산점 등록기간)에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」(https://local.gosi.go.kr)에 접속하여 가산비율을 확인하고, 취업지원 (의사상자 등)여부, 보훈(증서)번호, 가산비율, 자격증명,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.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.
- 3)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(신청)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. (필기시험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.)
- 4)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점, 공통적용 가산점,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은 각각 가산됩니다.
- 5) 방송통신(통신기술)의 경우처럼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에 공통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합니다.

10.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.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등 관계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나.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 불능,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.
- 다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과 시험종사자(감독관, 관리관)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라. 응시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(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여권)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종사자(감독관, 관리관)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마. 시험시간 중에 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산기기(휴대폰, 테블릿PC, 스마트시계, 스마트밴드, 이어폰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)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.

- 바.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「지방 공무원 임용령」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사.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아.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자.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홈페이지(www.chungbuk.go.kr 시험채용)란에 게시합니다.
- 차.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 및 제66조(정년)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66조(정년)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카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 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-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 - 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- 2.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- 3.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- 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타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및 제89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)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-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- 1. 공공기관
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
가. ~ 아. 〈생 략〉

-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"협회"라 한다)
-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- **제89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)**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
11. 2021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

※ 상세내용은 [붙임 3] '2021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' 참고

가. 2021년 변경

- 1)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됩니다.
- 2) 동일 날짜 시행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간 중복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.
- 3)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'영어'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, 7급 공개경쟁임용 시험 '한국사'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.

나. 2022년 변경

- 1)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이 개편됩니다.
 - 제2차 시험과목 중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·과학·수학 과목이 제외됩니다.
 -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, 속기직류를 제외한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과목이 제외됩니다.

기타 세부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(교육고시팀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043) 220–2533 ~ 2537